



2020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 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Contents

-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2 연말정산 개요
- 3 연말정산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 4 연말정산 전 비과세 근로소득 중점 확인사항
- 5 연말정산 시 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 6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 7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
- 8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유형별 업무 절차
- 9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10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1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유의사항
- 12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란?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별납부자는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자를 말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징수합니다.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 회사(월별납부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합니다.
- ※ **반기별납부자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 2020년(근로자 홍길동) | | | | | | | | | | | | | 2021년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 |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세액 납부 (연간 234,240원 납부) | | | | | | | | | | | | |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 200,000원 | |
| 예시) 월 급여액 200만원(부양가족 없는 경우) : 월 19,520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방소득세 1,950원 별도) | | | | | | | | | | | | | 34,240원 환급 | |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무조건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나요?

-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시 반드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 * 간이세액표 보다 소득세를 임의적으로 적게 원천징수한 경우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신청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선택이 없을 경우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 적용)



근로자들이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

연말정산 신고절차

| 구 분 | 일 정 대 상 | 주요내용 |
|-------------------------------------|------------------------|---|
| 연말정산 업무준비 | '20.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연말정산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공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 | 회사⇒근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가 흠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여부 확인(제출기관→간소화→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기관은 1.15.~1.18.까지 미제출 자료에 대해 추가 및 수정제출 가능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 21.1.15.~ 2.15.(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가 흠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여부 확인(제출기관→간소화→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기관은 1.15.~1.18.까지 미제출 자료에 대해 추가 및 수정제출 가능 |
| | 근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및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 근로자 및 중도 입사자는 전(종)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추가 작성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1.20.~2.15.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및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 근로자 및 중도 입사자는 전(종)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추가 작성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 | 근로자⇒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 요건 등 검토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추가 제출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분납 가능 |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1.20~2월 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 요건 등 검토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추가 제출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분납 가능 |
| | 회사⇒근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흠텍스 (www.hometax.go.kr)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 내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1%(3개월 이내 : 0.5%) 가산세 부담 ·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흠텍스 전자 신고 시 함께 제출 환급발생 시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가능 환급신청의 경우 '2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3.10일 기한)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신청 후 국세청은 30일 이내 근로소득세 환급 |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3.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흠텍스 (www.hometax.go.kr)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 내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1%(3개월 이내 : 0.5%) 가산세 부담 ·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흠텍스 전자 신고 시 함께 제출 환급발생 시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가능 환급신청의 경우 '2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3.10일 기한)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신청 후 국세청은 30일 이내 근로소득세 환급 |



| 수집 서류 | | 수집대상자 |
|--------------------------------------|---|---|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부양가족이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부속서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
|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 | 장애인 증명서 등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
| |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 전(종) 근무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 퇴직자 또는 20이상 회사의 근무자 |
|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

☞ 회사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안내

- 회사는 근로자에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 '21.1.15.부터 서비스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제출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에 제출하지 않은 증명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근로자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 | 독신 (본인) |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
|--------------|-------------|-----------------|--------------------|---------------------|
| 연간 총 급여 | 1,408만 원 이하 | 1,623만 원 이하 | 2,499만 원 이하 | 3,083만 원 이하 |

☞ 회사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4대보험료,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증명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필요합니다.



| 구 분 | 중점 확인사항 |
|-----------------------|--|
| 국외근로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 비과세 (원양어업 선박, 국외항행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p>잘못 적용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100만원 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야하나 월 300만원을 비과세 적용한 경우 -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 직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
| 연구보조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교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등 |
| 연구활동비 | <p>잘못 적용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 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p>잘못 적용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 보조수당으로 오류 기재한 경우 <p>※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전문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p> |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까지 비과세 <p>잘못 적용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한 경우 - 임금협상 등으로 인하여 급여가 소급인상된 근로자의 월정액급여를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하지 않는 경우 - 광산·일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함에도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



※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의 과다공제를 주의하세요.

| 구 분 | 중점 확인사항 |
|-----------|---|
| 인적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
| 주택자금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확인 -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확인 -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확인 -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년 이전 3억원, 2014년~2018년 4억원)인지 확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
| 주택마련 저축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제외 대상) 또는 본인 명의 여부 확인 |
| 보험료 세액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



| 구 분 | 중점 확인사항 |
|-------------|--|
| 의료비 세액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 교육비 세액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자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 기부금 세액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인지 확인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종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였는지 확인-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대상이 아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또는 지정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 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 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
| 월세액 세액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p>※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 2.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p> |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가산세를 부담

$$\text{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times 3\% + (\text{과소·무납부세액} \times 2.5/10,000 \times \text{경과일수}) \leq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leq 10%)



원천징수 종합안내 홈페이지 운영

-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전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원천세

연말정산 관련 책자 및 동영상 등 제공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책자파일 및 동영상 등을 제공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2021년 1월) 책자,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신고안내 해설 동영상

이용방법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20년 12월~'21년 2월)

-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 대상으로 세무서에서 실시하던 연말정산 교육을 유튜브 동영상 자료로 대체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유튜브 → 검색란에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홈택스 지급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제공

- 영세 사업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지급명세서 직접작성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퇴직등)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간편제출)

- 근로자는 소득·세액신고서와 간소화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 등은 이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아이콘) →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설 파일 및 조회 프로그램 제공

-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급여 구간별로 미리 계산하여 정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해설서 책자파일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에 의한 원천세 반기별납부제도 운영

-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매년 6월, 12월)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 제출서류 | 제출 내용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45호 서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징수의무자는 '21년 2월 지급분과 함께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21년 3월 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 기관 등에 납부하고,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금액도 신고서에 포함)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 명세서 포함)를 제출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신고서 상 「②환급세액 조정」란의 「⑩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조정환급도 가능 |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24호서식(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신청/제출→(근로, 퇴직 등) 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접작성제출방식)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자체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전산파일을 변환제출방식으로 제출 (CD 등 전산매체를 이용한 제출) 자가사용 프로그램으로 전산 매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제출 (서면 작성 제출) 직전연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와 상시근로자의 수가 10명 이하인 자는 서면으로 「소득자료제출 집계표」를 부착하여 제출할 수 있음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3개월 이내 지연제출은 0.5%)를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함 * 가산세 한도 :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1억원) |
|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45호 서식]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43호 서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등으로 전산 제출 * 기부금명세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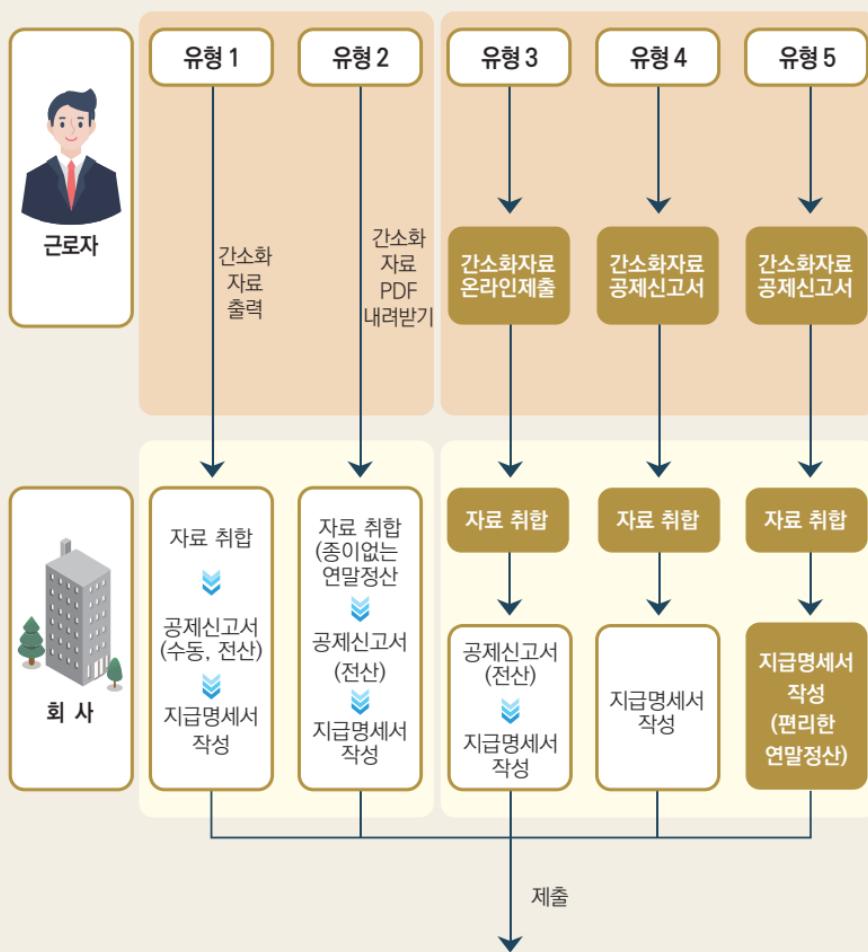


| 구분 | 이용 대상자 |
|-----|---|
| 유형1 |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출력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
| 유형2 | 근로자의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
| 유형3 |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서류를 흠택스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 유형4 | 흡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 유형5 | 흡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공제 증명서류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절감) |

※ 유형 3·4·5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용 가능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구 분 | 2019년 | 2020년 | | | | | | | | | | | | |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p>▣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 휴기급여등 〈추가〉 | <p>▣ 비과세 대상 확대</p> <p>└ (좌 동)</p> <p>● 배우자 출산휴가급여</p> | | | | | | | | | | | | |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 <p>▣ 근로소득공제</p> <table border="1"> <tr><td>총급여</td><td>공제율</td></tr> <tr><td>500만원 이하</td><td>70%</td></tr> <tr><td>500만~1,500만원 이하</td><td>40%</td></tr> <tr><td>1,500만~4,500만원 이하</td><td>15%</td></tr> <tr><td>4,500만~1억원 이하</td><td>5%</td></tr> <tr><td>1억원 초과</td><td>2%</td></tr> </table> <p>〈추가〉</p> | 총급여 | 공제율 | 500만원 이하 | 70% | 500만~1,500만원 이하 | 40% | 1,500만~4,500만원 이하 | 15% | 4,500만~1억원 이하 | 5% | 1억원 초과 | 2% | <p>▣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p> <p>└ (좌 동)</p> <p>● 공제 한도 : 2,000만원</p> |
| 총급여 | 공제율 | | | | | | | | | | | | | |
| 500만원 이하 | 70% | | | | | | | | | | | | | |
| 500만~1,500만원 이하 | 40% | | | | | | | | | | | | | |
| 1,500만~4,500만원 이하 | 15% | | | | | | | | | | | | | |
| 4,500만~1억원 이하 | 5% | | | | | | | | | | | | | |
| 1억원 초과 | 2% | | | | | | | | | | | | | |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p>▣ 자녀세액공제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p>▣ 대상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삭 제> | | | | | | | | | | | | |
|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 임차자금 대여 이익제외 | <p>▣ 근로소득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 <p>▣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 | | | | | | | | | | |
|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 혜택 제공 | <p>▣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세액공제한도 : 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p>〈신설〉</p> | <p>▣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 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납입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 | | | | | | | | | | | |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 <p>▣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기준 금액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봉급·급여·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 <p>▣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 | | | | | | | | | | |
|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이 되는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 <p>▣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임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 <p>▣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p>└ (좌 동)</p> <p>●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p> | | | | | | | | | | | | |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 <p>▣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 <p>▣ 가산세율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 5% | | | | | | | | | | | |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p>▣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한도) 연간 2천만원 ● (적용기한) 2020.12.31. | <p>▣ 대상범위·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시가-행사가액) ●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 | | | | | | | | | | | |



| 구 分 | 2019년 | 202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 <p>▣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 <p>▣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② 선택 가능 <p>*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제출</p>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 〈신 설〉 | <p>▣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 2022.12.31. <p>*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p>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 <p>▣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요건)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 <p>▣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p>*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p>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 <p>▣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p>▣ 대상업종 확대</p> <p>●(좌 동)</p> <p>●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p> <p>*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p> | | | | | | | | | | | | | | | | | | | | | | | | |
|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 <p>▣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th> <th>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 (5.5천만원)</td> <td>400만원 (700만원)</td> <td>15%</td> </tr> <tr> <td>1억원 이하 (1.2억원)</td> <td></td> <td>12%</td> </tr> <tr> <td>1억원 초과 (1.2억원)</td> <td>300만원 (700만원)</td> <td></td> </tr> </tbody> </table> <p>〈신 설〉</p> <p>〈신 설〉</p> |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400만원 (7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억원) | | 12% | 1억원 초과 (1.2억원) | 300만원 (700만원) | | <p>▣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th> <th>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 (5.5천만원)</td> <td>600만원 (900만원)</td> <td>15%</td> </tr> <tr> <td>1억원 이하 (1.2억원)</td> <td></td> <td>12%</td> </tr> <tr> <td>1억원 초과 (1.2억원)</td> <td>300만원 (700만원)</td> <td></td> </tr> </tbody> </table> <p>●(적용제외 대상)</p> <p>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p> <p>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p> <p>●(적용기한) 2022.12.31.</p> |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억원) | | 12% | 1억원 초과 (1.2억원) | 300만원 (700만원) | |
|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400만원 (700만원)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1억원 이하 (1.2억원)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1억원 초과 (1.2억원) | 300만원 (7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1억원 이하 (1.2억원)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1억원 초과 (1.2억원) | 300만원 (7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3~7월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20.3.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3~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30~8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30%</td> </tr> <tr> <td>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td> <td>60%</td> </tr>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td> <td>80%</td> </tr> </tbody> </table> <p>* '20년 1, 2, 7~12월 사용분은 15~40% 적용</p> |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30%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 60% | 전통시장·대중교통 | 80% | <p>▣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p>● 4~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3월</th> <th>4~7월</th> <th>8~12월</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30%</td> <td>80%</td> <td>15%</td> </tr> <tr> <td>현금영수증 등</td> <td>60%</td> <td></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 등</td> <td>80%</td> <td></td> <td>40%</td> </tr> </tbody> </table> | 구분 | 3월 | 4~7월 | 8~12월 | 신용카드 | 30% | 80% | 15% | 현금영수증 등 | 60% | | 30% | 전통시장 등 | 80% | | 40% |
| 구분 | 공제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통시장·대중교통 |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3월 | 4~7월 | 8~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 | 30% | 80%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영수증 등 | 60%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통시장 등 | 80%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 기준</th> <th>한도</th> </tr> </thead> <tbody> <tr> <td>7천만원 이하</td> <td>300만원</td> </tr> <tr> <td>7천만원~1.2억원</td> <td>250만원</td> </tr> <tr> <td>1.2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p>*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p> <p>●(적용기한) '22.12.31.</p> | 총급여 기준 | 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1.2억원 | 25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p>▣ '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p> <p>● '20년 귀속에 한해 30만 원 상향</p>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 기준</th> <th>한도</th> </tr> </thead> <tbody> <tr> <td>'20년</td> <td>'21·'22년</td> </tr> <tr> <td>7천만원 이하</td> <td>330만원</td> </tr> <tr> <td>7천만원~1.2억원</td> <td>280만원</td> </tr> <tr> <td>1.2억원 초과</td> <td>230만원</td> </tr> </tbody> </table> <p>*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p> <p>●(좌 동)</p> | 총급여 기준 | 한도 | '20년 | '21·'22년 | 7천만원 이하 | 330만원 | 7천만원~1.2억원 | 280만원 | 1.2억원 초과 | 230만원 | | | | | | |
| 총급여 기준 | 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천만원~1.2억원 | 25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급여 기준 | 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년 | '21·'2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천만원 이하 | 33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천만원~1.2억원 | 28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억원 초과 | 23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간 근로소득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과세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법령·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선원법에 의한 식료품, 일·숙직비 등,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제복·제모·제화, 특수분야 종사자의 수당, 천재지변으로 받은 급여 등 ● 국외근로소득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연금계좌·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소득공제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총급여액</th> <th>근로소득공제금액(2,000만원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500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의 70%</td> </tr> <tr> <td colspan="2">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td> <td>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td> </tr> <tr> <td colspan="2">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 <td>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td> </tr> <tr> <td colspan="2">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td> </tr> <tr> <td colspan="2">1억원 초과</td> <td>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td> </tr> </tbody> </table> | 총급여액 | | 근로소득공제금액(2,000만원 한도) | 500만원 이하 |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 | | |
| 총급여액 | | 근로소득공제금액(2,000만원 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500만원 이하 | | 총급여액의 70% | | | | | | | | | | | | | | | | | | | | |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 | | | | | | | | | | | | | | | | | | |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 | | | | | | | | | | | | | | | | | | |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 | | | | | | | | | | | | | | | | | | | |
| 1억원 초과 |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적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나이요건(장애인은 나이요건 제한 없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부양가족</th> <th>직계존속</th> <th>직계비속</th> <th>형제자매</th> <th>위탁아동</th> <th>수급자</th> </tr> </thead> <tbody> <tr> <td>나이요건</td> <td>60세 이상 ('60.12.31. 이전)</td> <td>20세 이하 ('00.1.1. 이후)</td> <td>20세 이하 60세 이상</td> <td>6개월 이상 양육</td> <td>제한없음</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공제대상</th> <th>경로우대 (70세 이상)</th> <th>장애인</th> <th>부녀자 (부양/기혼)</th> <th>한부모*</th> </tr> </thead> <tbody> <tr> <td>공제금액</td> <td>100만원 ('50.12.31. 이전)</td> <td>200만원</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p>*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공제는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p>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60.12.31. 이전) | 20세 이하 ('00.1.1. 이후) | 20세 이하 60세 이상 | 6개월 이상 양육 | 제한없음 | 공제대상 | 경로우대 (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50.12.31. 이전)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 | | | | | | | | | | | | | | | | |
| 나이요건 | 60세 이상 ('60.12.31. 이전) | 20세 이하 ('00.1.1. 이후) | 20세 이하 60세 이상 | 6개월 이상 양육 | 제한없음 | | | | | | | | | | | | | | | | | | |
| 공제대상 | 경로우대 (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부양/기혼) | 한부모* | | | | | | | | | | | | | | | | | | | |
| 공제금액 | 100만원 ('50.12.31. 이전)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연금보험료 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본인 부담금 : 전액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특별소득 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주택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연 3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13.8.13. 이후 지급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② 주택마련저축공제 : 납입액의 40%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아님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3d3d3;">공제종류</th>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d3d3d3;">공제금액(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장상환액 전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 전체(②+④+⑤) 한도액 ② 가 2015.1.1. 이후 차입 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 and 비거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 or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 or 비거치) : 300만원</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원리금 상환액 $\times 40\%$</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제한도 : Min(①, ②) ① : ④+⑤ ② : 연300만원</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저축 납입액 $\times 40\%$</td> <td></td></tr> </tbody> </table> | | 공제종류 | 공제금액(한도액) | | 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 이장상환액 전액 | ※ 전체(②+④+⑤) 한도액 ② 가 2015.1.1. 이후 차입 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 and 비거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 or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 or 비거치) : 300만원 | 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원리금 상환액 $\times 40\%$ | 공제한도 : Min(①, ②) ① : ④+⑤ ② : 연300만원 | 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저축 납입액 $\times 40\%$ | |
| 공제종류 | 공제금액(한도액) | | | | | | | | | | | | | |
| 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 이장상환액 전액 | ※ 전체(②+④+⑤) 한도액 ② 가 2015.1.1. 이후 차입 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 and 비거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 or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 or 비거치) : 300만원 | | | | | | | | | | | | |
| 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원리금 상환액 $\times 40\%$ | 공제한도 : Min(①, ②) ① : ④+⑤ ② : 연300만원 | | | | | | | | | | | | |
| 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저축 납입액 $\times 40\%$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이월분(2013년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월된 지정기부금 중 공제한도 내 금액 | | | | | | | | | | | | | |
| (-) 그 밖의 소득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00.12.31. 이전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연 72만원 한도)의 40%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3d3d3;">근로(사업)소득 금액</th> <th style="background-color: #d3d3d3;">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원~1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body> </table> <p>2016년 이후 가입분부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p>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공제(공제시기 변경 신청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 | 근로(사업)소득 금액 | 공제한도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1억원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 | | |
| 근로(사업)소득 금액 | 공제한도 | | | | | | | | | | | | | |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 | | | | | | | | | | |
| 4천만원~1억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3d3d3;">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d3d3d3;">소득공제액</th> <th style="background-color: #d3d3d3;">공제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이후 출자·투자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과세연도 종합(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 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td></tr> </tbody> </table> | | 구분 | 소득공제액 | 공제한도액 | 2018년 이후 출자·투자분 |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 해당 과세연도 종합(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 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 |
| 구분 | 소득공제액 | 공제한도액 | | | | | | | | | | | | |
| 2018년 이후 출자·투자분 |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 해당 과세연도 종합(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 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소득공제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결제수단 및 사용처별</th> <th colspan="4">공 제 율</th> </tr> <tr> <th>1~2월</th> <th>3월</th> <th>4~7월</th> <th>8~12월</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15%</td> <td>30%</td> <td rowspan="4">80%</td> <td>15%</td> </tr> <tr> <td>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td> <td>30%</td> <td>60%</td> <td>30%</td> </tr> <tr> <td>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지만 해당)</td> <td>30%</td> <td>60%</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td> <td>40%</td> <td>80%</td> <td>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 +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 최대 63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7천만원 이하</td> <td>33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td> </tr> <tr> <td>7천만원~1억2천만원</td> <td>280만원</td> </tr> <tr> <td>1억2천만원 초과</td> <td>23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12.31.까지 임금삭감액(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50%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 |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 제 율 | |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지만 해당) | 30% | 60%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80% | 40% | 총급여액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7천만원~1억2천만원 | 28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230만원 | | | | | | |
|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 제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지만 해당) | 30% | 60%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80%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급여액 | 공제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천만원 이하 |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천만원~1억2천만원 | 28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억2천만원 초과 | 23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p>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p> <p>*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청약 저축 등,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신용카드, 투자조합 등 출자(공제율 30·50·70·100% 적용분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표준 |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기본세율 |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h>산출세액 계산</th> </tr> </thead> <tbody> <tr> <td>1천200만원 이하</td> <td>6%</td> <td>과세표준 × 6%</td> </tr> <tr> <td>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td> <td>15%</td> <td>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15%)</td> </tr> <tr> <td>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td> <td>24%</td> <td>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24%)</td> </tr> <tr> <td>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35%</td> <td>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38%</td> <td>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38%)</td> </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40%</td> <td>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40%)</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42%</td> <td>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42%)</td> </tr> </tbody> </table> <p>〈간편법〉</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산식</th> </tr> </thead> <tbody> <tr> <td>1천200만원 이하</td> <td>과세표준 × 6%</td> </tr> <tr> <td>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td> <td>(종합소득 과세표준 × 15%) - 108만원</td> </tr> <tr> <td>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td> <td>(종합소득 과세표준 × 24%) - 522만원</td> </tr> <tr> <td>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종합소득 과세표준 × 35%) - 1,490만원</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종합소득 과세표준 × 38%) - 1,940만원</td> </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종합소득 과세표준 × 40%) - 2,540만원</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종합소득 과세표준 × 42%) - 3,540만원</td> </tr> </tbody> </table>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1천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40%) | 5억원 초과 | 42% |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42%) | 과세표준 | 산식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종합소득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종합소득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종합소득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천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억원 초과 | 42% |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표준 | 산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종합소득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종합소득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억원 초과 | (종합소득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 | | | | | | | | | | | | | | | |
| (-) 세액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21.12.31.까지 취업 시 5년(병역 이행 후 1년 내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난지 아니한 경우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간 90% (150만원 한도) 감면 • 청년 이외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21.12.31.까지 취업 시 3년간 70%(150만원 한도) 감면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5년간 50%) • 정부간 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 • 외국인 기술자 감면 : 550%, 70% 감면 • 조세조약의 교직자 조항에 따라 교사, 교수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세액공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산출세액</th> <th>세액공제 금액</th> <th>한도</th> </tr> </thead> <tbody> <tr> <td>130만원 이하</td> <td>산출세액의 55/100</td> <td>· 총급여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td> </tr> <tr> <td>130만원 초과</td> <td>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분 × 30/100</td> <td>· 3천3백만원~7천만원 :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50만원</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총급여액</th> <th>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3,300만원 이하</td> <td>74만원</td> </tr> <tr> <td>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td> <td>Max(①, ②) ① 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8/1,000 ② 66만원</td> </tr> <tr> <td>7,000만원 초과</td> <td>Max(①, ②) ①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1/2 ② 50만원</td> </tr> </tbody> </table>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로 7세이상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개인형퇴직연금(IPR),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 특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세액공제(12%, 장애인전용 15%) - 보장성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연 100만원 한도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금액 | 한도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100 | · 총급여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분 × 30/100 | · 3천3백만원~7천만원 :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한도액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Max(①, ②) ① 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8/1,000 ② 66만원 | 7,000만원 초과 | Max(①, ②) ①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1/2 ② 50만원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금액 | 한도 | | | | | | | | | | | | | | | |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100 | · 총급여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 | | | | | | | | | | | | | | |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분 × 30/100 | · 3천3백만원~7천만원 :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50만원 | | | | | | | | | | | | | | | | |
| 총급여액 | 한도액 | | | | | | | | | | | | | | | | |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 | | | | | | | | | | | | | | |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Max(①, ②) ① 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8/1,000 ② 66만원 | | | | | | | | | | | | | | | | | |
| 7,000만원 초과 | Max(①, ②) ①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1/2 ② 50만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세액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 세액공제(15%, 난임시술비 20%)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이 공제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가족(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재)등록 된 자 : 공제대상 한도 없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교육비 세액공제(15%)<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 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전액 공제대상-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ul style="list-style-type: none">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인당 연 300만원(초·중·고생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포함)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공제대상 한도· 장애인(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재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장애인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비용은 장애아동(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 |
| 세액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 세액공제<ul style="list-style-type: none">유형별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액 합계액이 공제대상(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 분만 공제 가능)<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을 합하여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0년), 지정기부금(10년)·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우러세액 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ul style="list-style-type: none">(연 13만원) → 정치자금, 우리사주 기부금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공제<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ul style="list-style-type: none">· ('95.11.1.~'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 결정세액 | <p>(=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근로자 중 단일세율 적용신청자 =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 \times 19\%$· 단일세율 적용 신청자는 비과세,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함 |
| (-)기납부세액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
| 차감징수세액 | <p>(=결정세액 - 기납부세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



▶ 동일한 소득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해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최종 전송한 자료만 유효하게 제출된 자료로 인정합니다.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식(작성·변환방식)과 상관없이 제출할 때마다 자료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제출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 흠택스로 제출하는 자료는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와 제출자의 로그인 아이디로 제출 유효여부를 판단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여러 개의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사업자번호지만 부서사용자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모두 유효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 총괄부서사용자는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목록을 볼 수 있고,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총괄부서 사용자가 자료를 제출하면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제출 취소처리되고 총괄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납니다.

- 총괄부서사용자가 부서사용자 목록에 보이는 모든 부서사용자 자료를 선택하지 않고 일부만 선택해서 제출하게 되면, 선택하지 않은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도 삭제되니 총괄부서사용자는 취합할 때 부서사용자들이 모두 제출했는지 확인 후 제출 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이 경과한 지급명세서는 흠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하려면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흠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마감일 + 2일 경과 전까지만 흠택스로 삭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세금신고 삭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흠택스로 제출 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삭제요청]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관할세무서로 제출 시, 흠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자료실]에서 [세금신고 삭제 요청서 서면 제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흠택스 창을 여러 개 띄워서 작업할 수 없습니다. 여러 창에서 동시에 작업하면 이미 입력된 데이터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본점사업자가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변환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A레코드는 본점사업자번호를, B레코드에서는 지점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보 유형 | 서비스 조회 경로 |
|------------------------|---|
| 연말정산 정보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개정세법,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 등 |
|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 앱] ①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 제출 ②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③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④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⑤ 간소화 자료조회 ⑥ 대화형 자기검증 ⑦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⑧ 간소화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 ⑨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⑩ 3개년 신고내역 조회 ⑪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내역 확인 |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 예상세액 계산하기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바로가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 과거 5년간 조회('20년 귀속분은 '21년 5월부터 조회가능) |
| 실손보험금 수령내역 조회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원천징수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 홈택스 지급명세서 작성프로그램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인터넷 국세상담센터 : 흠탕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자주묻는 상담 사례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전 화 (국번없이) 126

(내선 2~3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내선 1~5번)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내선 1~1번) 현금영수증 상담
(내선 1~3번) 지급명세서 상담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상담

(내선 5~1번) 흠탕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내선 5~2번) 연말정산 세법 상담

방 문 전국 세무서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